땅끝 해남소식

2022년 10월 4일(530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 군정방침 ◇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공고·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해남군 조례 제3167호 ---------- 2
⊙ 해남군 조례 제3168호 ---------- 6
⊙ 해남군 조례 제3169호 ---------- 9
⊙ 해남군 조례 제3170호 ----------15
⊙ 해남군 조례 제3171호 ----------20
⊙ 해남군 조례 제3172호 ----------36
⊙ 해남군 조례 제3173호 ----------41
⊙ 해남군 조례 제3174호 ----------46
⊙ 해남군 조례 제3175호 ----------51
⊙ 해남군 조례 제3176호 ----------54
⊙ 해남군 조례 제3177호 ----------57
⊙ 해남군 조례 제3178호 ----------62
⊙ 해남군 조례 제3179호 ----------65

규칙

⊙ 해남군 규칙 제1356호 ---------- 74

공고

⊙ 해남군 공고 제4421호 ---------- 81
⊙ 해남군 공고 제4690호 ---------- 84

조 례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redacted]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67호

붙임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1부.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됨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남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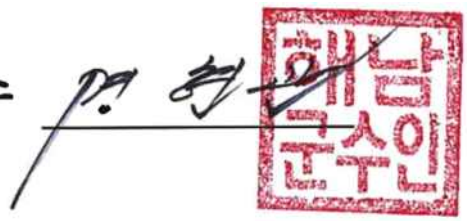

해남군 조례 제3168호

붙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수탁관리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 수탁관리권-----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69호

붙임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8조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6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의료비	제6조제2호	연간 20만원 이내	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3호	1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제6조제4호	법률 상담 연계 등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제6조제4호	50만원 이내 (소송 1건당)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그 밖의 사업	제6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제7조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직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 민원인명: ○ 육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피해 내용	○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소송 지원( ) 휴식시간( )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_____ , 계좌번호 _____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중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0호

붙임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부.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해남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남군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재산의 관리 방법과 출연금·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 사업

2.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3. 평생교육 관련 사업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5.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6. 민·관·학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8.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성과계약 등) 재단은 경영목표와 성과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군수와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

을 가진 공익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을 위촉하여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 조례 제3171호

붙임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다목적문화실, 비디오감상실, 동아리방, 상담실, 인터넷부스, 어린이놀이방, 다·예체험실, 문예창작실, A/V감상실, CD부스, 음악연습실”을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료열람실, 전자정보실, 아동열람실, 자유학습실”을 “어린이자료실, 제1종합자료실, 제2종합자료실, 씨네하우스, 영상창작실”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제20조 중 “3층”을 “2층”으로, “다목적문화실, 비디오감상실,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놀이방, 창작실, A/V감상실, 청소년 문화연습실, 음악연습실, 다·예체험실, 인터넷부스”를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강료 징수·면제·반환) ① 군수는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수는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제2호 중 ""자료열람실""을 ""종합자료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아동열람실""을 ""어린이자료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열람실)"을 "(자료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열람실"을 "자료실"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보실(전자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종합자료실

3. 어린이자료실

제33조제2항 중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의 집” 이란 다목적문화실, 비디오감상실, 동아리방, 상담실, 인터넷부스, 어린이놀이방, 다·예체험실, 문예창작실, A/V감상실, CD부스, 음악연습실,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말한다.	3. ----------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
4. “도서관” 이란 자료열람실, 전자정보실, 아동열람실, 자유학습실 등 주민의 정보이용공간을 말한다.	4. ---------- 어린이자료실, 제1종합자료실, 제2종합자료실, 씨네하우스, 영상창작실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휴관일) 문예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5조(휴관일) ----------. ----------.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문예	제20조(사용범위) ----------

회관 3층에 있는 시설물 중 다목적문화실, 비디오감상실,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놀이방, 창작실, A/V감상실, 청소년 문화연습실, 음악연습실, 다·예체험실, 인터넷부스, 안내데스크 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 2층----------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
<신 설>	제24조(수강료 징수·면제·반환) ① 군수는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수는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료열람실” 이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 있는 각종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종합자료실” ----------.
3. “전자정보실” 이란 전산망을 통해 디지털화 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삭 제>
4. “아동열람실” 이란 초등학생 이하 또는 유아를 동반한 어른이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어린이자료실” ----------.
5. “자유학습실” 이란 도서관 5층에 설치되어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7조(열람실)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평생 교육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열람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실) ---------- 자료실----------.
1. 자료 열람실	1. 종합자료실
2. 전자 정보실(전자 도서관)	2. --- 도서관
3. 아동 열람실	3. 어린이자료실
4. 자유 학습실	<삭 제>

제3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① (생 략)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7을 ---------- ---------- ----------.

<별지>

[별표 1] (현 행)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구 분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비 고
문예체육시설관	공 연 장		오 전	09:00 ~ 12:00	1 회
			오 후	13:00 ~ 17:00	1 회
			야 간	18:00 ~ 22:00	1 회
	전 시 실		1 일	09:00 ~ 20:00	1일을 1회로 본다
	다목적실	예식장	1회당 90 분	11:00 ~ 15:00	
		기 타	오 전	09:00 ~ 12:00	1회 행사가 1일 소요됨이 인정되는 행사는 1일을 1회로 보고 그 외 행사는 공연장 이용기준과 동일 적용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생활체육시설		1 일	09:00 ~ 21:00	헬스장 및 에어로빅은 회원권으로하되 이용여건에 따라 사용시간내에서 운영시간 조정
	연습실		1 일	09:00 ~ 20:00	
문화의 집	평 일		1 일	09:00 ~ 20:00	
	토·일요일		1 일	10:00 ~ 18:00	
도 서 관	자유 학습실		1 일	08:00 ~ 22:00	
	자료 열람실		1 일	09:00 ~ 18:00	

[별표 1] (개 정 안)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구 분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비 고
문예체육 시 설 관	공 연 장		오 전	09:00 ~ 12:00	1회
			오 후	13:00 ~ 17:00	1회
			야 간	18:00 ~ 22:00	1회
	전 시 실		1일	09:00 ~ 20:00	1일을 1회로 본다
	다목적실	예식장	1회당 90분	11:00 ~ 15:00	
		기 타	오 전	09:00 ~ 12:00	1회 행사가 1일 소요됨이 인정되는 행사는 1일을 1회로 보고 그 외 행사는 공연장 이용기준과 동일 적용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생활체육시설		1일	09:00 ~ 21:00	헬스장 및 에어로빅은 회원권으로하되 이용여건에 따라 사용시간내에서 운영시간 조정
	연습실		1일	09:00 ~ 20:00	
문화의 집	전 강의실		1일	09:00 ~ 18:00	야간강좌 개설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도 서 관	어린이자료실		1일	09:00 ~ 18:00	
	제1종합자료실		평일	09:00 ~ 22:00	이용여건에 따라 사용시간내에서 운영시간 조정
			주말	09:00 ~ 18:00	
	제2종합자료실		1일	09:00 ~ 18:00	

[별표 2] (현 행)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내용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영화)등	행 사	
문예체육시설관	공 연 장		오전	100,000	200,000	1. 토요일 오후,야간,일요일,공휴일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전시실, 결혼예식은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매시간 초과시마다 조례 제9조제3항 적용 가산 ※ 1일을 1회로 할 경우 야간기준 적용
			오후	150,000	250,000	
			야간	200,000	300,000	
	전 시 실		1 일	55,000		
	다목적실	결혼예식	1 회	100,000		
		결혼예식 외 사용	오전	6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생활체육시 설		1 월	헬스장 25,000		· 헬스장 이용자중 3개월 이상 장기등록회원에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신분증을 제시한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단,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문화의집	다목적문화실		1 일	15,000		전시실 면적과 다목적실 면적 비율을 감안 전시실 대관료의 4분의 1 적용
군민광장 (야외무대 포함)			1 일	1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	외 제	1 회	60,000	조 율 료 본인부담
		국 산		40,000	
	중 형(국산)			30,000	
무대조명	종합조명		1 회	50,000	
	일반조명			30,000	
	효과기(눈,비,구름등)		1 회	30,000	
	드라이아이스		1 회	65,000	
	스모그기기		1 회	20,000	
무대기계	상 부 무 대		1 회	50,000	
	승하강무대(오케스트라리프트)		1 회	30,000	
	덧 마 루		1 회	20,000	
무대음향	마 이 크	유선마이크	1회(3대)	10,000	초과시 대당 5,000
		무선마이크	1회(3대)	15,000	초과시 대당 7,000
	음 향 반 사 판		1 회	50,000	
영사설비	비디오프로젝트		1 회	20,000	
냉·난방	공 연 장	난방	1시간	51,000	
		냉방	1시간	48,000	
	문 체 관 다목적실	난방	1시간	40,000	
		냉방	1시간	40,000	
	전 시 실	난방	1일	36,000	
		냉방	1일	34,000	

3. 기타 사용료

구분 / 시설		기준	사용료	비고
영 화 촬 영		1 회	3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 녹화)	1 회	30,000	
	라 디 오	1 회	20,000	

[별표 2] (개 정 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내용		기준	사용료		비 고
				공연(영화)등	행 사	
문예체육시설관	공 연 장		오전	100,000	200,000	1. 토요일 오후,야간,일요일,공휴일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전시실, 결혼예식은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전시실 이외의 시설은 매시간 초과시마다 조례 제9조제3항 적용 가산 ※ 1일을 1회로 할 경우 야간기준 적용
			오후	150,000	250,000	
			야간	200,000	300,000	
	전 시 실		1일	55,000		
	다목적실	결혼예식	1회	100,000		
		결혼예식 외 사용	오전	60,000		
			오후	80,000		
			야간	100,000		
	생활체육시설		1월	헬스장 25,000		· 헬스장 이용자중 3개월 이상 장기등록회원에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신분증을 제시한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 단,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군민광장 (야외무대 포함)			1일	1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피아노	그랜드대형	외 제	1회	60,000	조 율 료 본인부담
		국 산		40,000	
	중 형(국산)			30,000	
무대조명	종합조명		1회	50,000	
	일반조명			30,000	
	효과기(눈,비,구름등)		1회	30,000	
	드라이아이스		1회	65,000	
	스모그기기		1회	20,000	
무대기계	상 부 무 대		1회	50,000	
	승하강무대(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덧 마 루		1회	20,000	
무대음향	마 이 크	유선마이크	1회(3대)	10,000	초과시 대당 5,000
		무선마이크	1회(3대)	15,000	초과시 대당 7,000
	음 향 반 사 판		1회	50,000	
영사설비	비디오프로젝트		1회	20,000	
냉·난방	공 연 장	난방	1시간	51,000	
		냉방	1시간	48,000	
	문 체 관 다목적실	난방	1시간	40,000	
		냉방	1시간	40,000	
	전 시 실	난방	1일	36,000	
		냉방	1일	34,000	

3. 기타 사용료

구분 / 시설		기준	사용료	비고
영 화 촬 영		1회	3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 녹화)	1회	30,000	
	라 디 오	1회	20,000	

[별표 3] (신 설)

수강료 징수 · 면제 · 반환기준

(제24조제3항 및 같은조 제4항 관련)

1. 수강료 징수 기준

구 분	금액	비 고
월	1만원	교재비 · 재료비는 별도

2. 수강료 면제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제대상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4. 장애등급(1～3)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면제기준은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3.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강의의 폐쇄 및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강의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시점	전액 반환
2. 수강생 의사로 강의를 포기한 경우	가. 강의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나. 강의 시작	강의가 시작한 시점	첫달 수강료를 제외한 수강료
		강의 시작 후 1/2이 지난 시점	반환하지 않음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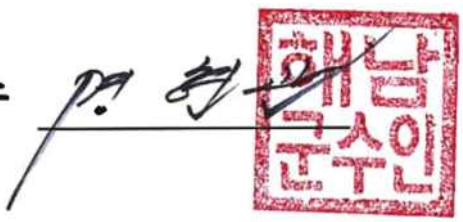

해남군 조례 제3172호

붙임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3호

붙임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부.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

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4호

붙임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1부.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나. 해남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출연한 기관

   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군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우수 공공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일상 업무 시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보(땅끝해남소식)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우수기관 선정)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redacted]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5호

붙임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비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운영비 지원) ① ---------- ---------- ---------- ---------- ---------- ---------- 보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6호

붙임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운영비 지원) ① ---------- ---------- ---------- ---------- ---------- ---------- 보조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7호

붙임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면제

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마목) 중 “해남군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자목) 중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 ----------
1. 전액면제: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전액면제 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경 가. (생 략) 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군 대표선수의 훈련 또는 연습경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 대회	2.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라. 전지훈련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전지훈련 종목	<삭 제>
마. 해남군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바. (생 략)	다. (현행 바목과 같음)
3. 100분의 50 감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및 행사	나. ---------- ----------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 ---------- ---------- ---------- ---------- ---------- ----------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삭 제>

사.·아. (생 략)	바.·사.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자.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아.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차. (생 략)	자. (현행 차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8호

붙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실,”을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로, 같은 호 중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공룡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도시과,”를 “안전교통과,”로, 같은 호 중 “건설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생 략) 2. 총무위원회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실, 문화예술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건설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 ----------. 1.(현행과 같음) 2. -------- -----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 ------ 공룡박물관, ---------- 3. ---------- 안전교통과, ----------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

제3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27.)에서 의결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조례 제3179호

붙임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8조의2제3항제9호 중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9. ----- 의장---------- ---------- ---------- ---------- ----------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현행>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현행>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현행>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현행>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규 칙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9. 5.)에서 의결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4일

해남군수 [illegible] 해남군수인

해남군 규칙 제1356호

붙임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마주침공간

가. 세미나실 - 회의, 강의 등의 다목적 공간

2. 학습공간

가. 문화나눔실 - 학습, 취미활동 지원 공간

나. 문화창작실 - 공예프로그램 등 창작활동 지원 공간

다. 문화활동실 - 유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3. 방음공간

가. 정보미디어실 - 정보검색 및 활용 공간

나. 문화동아리실 - 각종 동아리의 활동 공간

4. 기타공간

가. 안내데스크 - 문화의집 이용 및 문화프로그램 안내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토록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터넷부스”를 “정보미디어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1. 운영일지

2. 물품관리대장

6. 프로그램 운영일지

제19조제1항 본문 중 “아동열람실”을 “어린이자료실”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열람실”을 “자료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설 및 운영내용) ① 군수는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문화 이해의 장(문화 시청각실) 가. 인터넷 부스 - 정보검색 공간 나. 비디오 감상실 - 비디오 감상공간 다. A/V감상실 - 오디오·비디오 감상 라. 음악감상실 - CD부스 2. 문화 참여의 장(문화 관람실) 가. 음악연습실 - 노래방 및 악기 연주기능 나. 다목적문화실 - 영화, 공연관람, 회의, 강의 등의 다목적 공간 3. 문화 체험의 장(문화 창작실, 문화 사랑방) 가. 문예창작실 - 수공예, 꽃꽂이 등 창작활동 지원 공간 나. 청소년문화연습실 - 청소년의 다양한 과외활동 공간 다. 다·예체험실 - 다도문화체험 공간	제13조(시설 및 운영내용) ① 군수는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마주침공간 가. 세미나실 - 회의, 강의 등의 다목적 공간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2. 학습공간 가. 문화나눔실 - 학습, 취미활동 지원 공간 나. 문화창작실 - 공예프로그램 등 창작활동 지원 공간 다. 문화활동실 - 유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3. 방음공간 가. 정보미디어실 - 정보검색 및 활용 공간 나. 문화동아리실 - 각종 동아리의 활동 공간 다. 삭 제 라. 삭 제 4. 기타공간 가. 안내데스크 - 문화의집 이

라. 동아리방 - 동호인들의 모임 공간	용 및 문화프로그램 안내
4. 문화안내 및 기타	나. 삭 제
가. 안내데스크 -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관람권 예매	다. 삭 제
나. 상담실 - 각종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 유아놀이방 - 초등생 미만 유아 놀이공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 희망자를 연중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 ---------- ---------- ---------- ----------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장 등 비치) ---------- ---------- ---------- ---------
1. 근무일지	1. 운영일지
2. 자료대장	2. 물품관리대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인터넷부스 이용자 기록부	5. 정보미디어실 ---------
6. CD 이용자 기록부	6. 프로그램 운영일지

7. 비디오, DVD 이용자 기록부	<삭 제>
8. 프로그램 접수대장	<삭 제>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9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아동열람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 동반시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열람) ① ---------- ---------- ---------- ---------- 어린이자료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열람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열람자 준수사항) ---------- ---------- ---.
1. 열람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자료실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공 고

해남군 공고 제2022 - 4421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해 남 군 수

연번	신청인	신청지			면적(㎡)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1	김OO	마산면 노하리	242-3	임야	10,537	4,445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및 퇴비사)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공고기간: 2022. 9. 16. ~ 2022. 9. 30.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242-3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사업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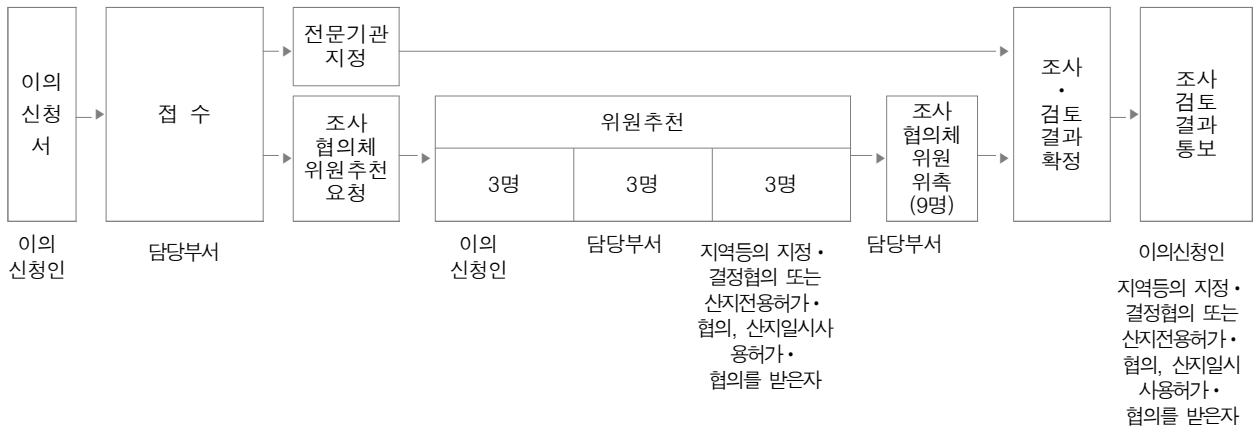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남군 공고 제2022 - 4690호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및 의견 청취 (변경)공고

1.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전 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군계획시설(광장)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6.

해 남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03-4번지 일원	5호 교통광장 A=3,851㎡	해남군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목적 : 군민의 교통편의시설 확충

○ 사업기간(예정) : 2022년 ~ 2023년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

○ 열람기간 : 2022. 10. 6. ~ 2022. 10. 20.
○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조서 참조

4.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변경)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		
합계				8,119	3,851							(당초)
				7,153	3,851							(변경)
1	해남읍 구교리	303-4	도	6,540	3,238	해남군						
2	해남읍 구교리	301-18	대	176	176	해남군						
3	해남읍 구교리	397-1	전	156	156	해남군						
4	해남읍 구교리	400-9	대	118	118	해남군						
5	해남읍 구교리	397	대	1,129	163	김*철	해남읍 구교3길 **					(당초)
		397-12	대	163	163	김*철	해남읍 구교3길 **	유한회사 **	해남읍 구교3길 **	전세권	-	(변경) 지번변경(분할), 관계인추가
								**금고	해남읍 읍내길 **	-	(전세권근저당)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남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